#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1151

제안연월일 : 2017년 11월 27일 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근거와 범위를
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
  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(안 제9조).

#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"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"를 "자율방범연합회가"로 하고,

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
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중 "정한다"를 "정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 <u> 수정안 조문 대비표</u>

제 정 안	수 정 안
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 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·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<u>자율방범연합</u> <u>회에 대하여</u>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 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· 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<b>자율방범연합</b> 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	제6조(지원 등) <u>① 시장은 자율방</u> 범연합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
<ul> <li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</li> <li>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</li> <li>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</li> <li>반영하여야 한다.</li> </ul>	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연 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 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 른다.	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u>정한다.</u>	제9조(시행규칙) <u>정할 수 있</u> <u>정할 수 있</u> <u>다</u> .

#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·보전함에 기여하 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"자율방범대"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자치구의 각 동 지역
    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
    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.
  - "자율방범연합대"란 각 자치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 체를 말한다.
  - "자율방범연합회"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
     다.
- 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는 시에 비영리민단간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에 적용한다.
- 제4조(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) 자율방범연합회는 각 자치구 자율방범 연합대의 대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한다.
- 제5조(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)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  - 1.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
  - 2. 합동 순찰·계도 활동

- 3.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
- 4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
- 5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
- 제6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 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 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**제7조(관계기관과 협력)**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감 독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포상)** 시장은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표장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장할 수 있다.
- 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